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오 형 근
(공업진흥청 조사과장)

1.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가. 기본방향

공업진흥청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단속결과와 품질향상 업무 연계에 중점을 두고 품질조사 및 단속업무는 시·도 위주로 실시하되 취약품목은 공업진흥청이 직접 조사한다. 품질취약 전기용품은 유통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품질향상지원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전류류(백열, 장식용), 전기다리미, 전자식 형광등용 안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장판 및 요, 전기밥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기능과 민간 자율적인 품질조사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나. 단속유형

전기용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일정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전기용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불량 공산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 하므로써 불법상품의 유통근절과 전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다. 단속방법

전국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공업진흥청 단속요원과 시·도·군·구 단속직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취약지역(상가 밀집 지역) 및 악덕수입업체, 밀수품 등 공업진흥청의 단속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또한 상설 기동특별단속반을 6개 지역반 63명으로 편성(공업진흥청, 검사소, 지방공업기술원,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운영하고 공진청 내에 상설 불법공산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조사과)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한다.

라. 단속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상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미필, 미표시,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수입전기용품의 한글표시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의 작동기능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대상품목

'92. 7. 1이후 적용 (35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수상기, 레코드플레이어, 앰프, 튜너, 테이프테크, 복사기,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냉방기, 전기소제기, 전기온풍기, 전기냉풍기, 전기보온밥통, 선풍기, 초음파가습기, 공기청청기, 전기건조기, 전기그릇세척기, 전기요, 전기물끓이기, 기타조리용전열기구, 전기토스타, 전기후라이팬, 쥬서믹서, 기타채난용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기약탕기, 전기장판, 전기다리미, 모발건조기, 전기면도기, 전기레인지,
'93. 1. 이후 적용
전압조정기 외 170개 품목

중고품에 대한 단속은 고물영업법에 의한 고물상 허가업소의 고물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상 신품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고발과 동시에 파기 또는 수거명령 조치를 병행하며 적발된 상품의 판매를 방지한다.

마. 단속시기

단속방법	단속시기	대 상
시·도합동단속	년 3회	형식승인 전품목
검경합동단속	수 시	취 약 지 역
상설기동특별 단속반 운영	문 제 발생 시	사회적 물의야기 품목
품 질 조 사	년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경쟁력 제고상품 • 안전위해상품 및 소비자 불만이 많은 품목 • 건축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 저급품의 무분별한 수입품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상품

2. 불법, 불량전기용품 제조(수입) 업체의 규제

가. 불법상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종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형에 처해지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1종 전기용품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1종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종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승인표시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보고, 검사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기용품의 파기 수거 명령에 위반하여 파기 또는 수거하지 않은 자, 개선명령에 위반하여 개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형을 받는다. 그리고 보고, 검사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에 처해진다.

○ 불법전기용품 처분유형

구 분	위 반 내 용	고 발	승인취소	등록취소	수거, 파기
제 조 (수 입)	• 승인미필(제조업 미등록)	○			
	• 승인미필(제조업 등록필)	○	○	○	
	• 표시미이행(형식승인필)	○	○		○
	• 표시미이행(신고필)	○			○
	• 허위승인표시(형식승인미필)	○			○
	• 허위신고표시(신고미필)	○			○
	• 자체검사 및 기록	○	○	○	
	• 취소후 생산	○	○	○	
	• 1년 이상 계속 제조업 휴지		○	○	

나. 불량상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

제조업체의 전기용품 품질조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공진청, 시, 도 또는 공진청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1종 전기용품 및 2종 전기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구입한 시료를 국립공업기술원, 각 지방공업기술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 기술기준에 의하여 시험하고, 공업진흥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며 공진청은 품질조사 시료에 대하여 시험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으로 구분하고 품질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 및 시, 도지사가 처분한다.

그리고 기술기준에의 적합의무등(법 제10조) 위반으로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동일품목(동일품목은 동일형식 구분을 말함)에 대한 신규 형식승인을 1년간 불허한다.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품질조사는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요령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2년 1회 제품검사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사후봉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서 평가기준 미달항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 조치기준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불량전기용품 처분기준(제조업자)

결함구분	처분사항	
	1종 전기용품	2종 전기용품
○ 최종결함 발생시 ○ 동일품목(동일형식 구분 또는 동일규격)으로 동일종결함이 년 2회 이상 발생시 ○ 종결함이 3개월 이상 발생시	형식승인 취소 및 수거명령	생산·출고정지명령(수입·판매 정지명령) (6월), 수거명령 및 개선명령
○ 종결함 발생시	생산·출고 정지명령(수입·판매 정지명령) (3월), 수거명령 및 개선명령	좌 동
○ 경결함 발생시	개선명령(수입·판매 정지명령)	좌 동

○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 점검항목

결함구분	처분사항	비고
최종결함 발생시	○ 형식승인 취소(법 제13조) ○ 업무정지 명령 6월(2종 전기용품) (법 제25조)	통지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진청장에게 보고
종결함 발생시	○ 업무정지 명령 3월(법 제25조) ○ 개선명령(법 제24조)	
경결함 발생시	○ 업무정지명령 1월(법 제25조)	

○ 수입판매업자 사후관리 조치기준

점검항목	결함내용			비고
	최종결함	종결함	경결함	
애프터서비스장비가 없을 때	○			
애프터서비스조직이 없을 때	○			
애프터서비스인원이 없을 때	○			
설비점검 및 보수규정이 없을 때			○	
계기교정을 받지 않았을 때			○	
애프터서비스부서 및 기능이 없을 때			○	
제품사용설명서가 없을 때		○		
제품에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			
제품에 표시는 하였으나 표시기준에 미달할 때			○	
수입판매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		
지위승계 소재지변경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		
보증기간을 명시한 제품보증서가 없을 때		○		

비고 1. 결함내용중 종결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결함으로, 경결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결함으로 각각 판정한다.

다. 불법, 불량상품 판매업자

형식승인 미표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소가 허위승인표시를 했을 때에는 고발 및 수

거 파기하고 신고 미표시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3. '92년도 사후관리 실적 및 '93년도 사후관리 방침

가. '92년도 사후관리 실적

'92. 8 31 현재

단 속 구 분	점검업체수	단속업체수	행정처분내용	단 속 지 역
시, 도 합동단속	2,559	15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발 114(40) • 수거파기 1(1) • 조치불가 2 • 조 치 중 33(24) • 기 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시, 도, 260개 시, 군, 구 전지역
검경합동 단속	95	9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치 중 9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 울
상설기동 단속	170	9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내는 수입품임.

나. '93년도 사후관리방침

공진청은 사후관리 계획을 종합해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정보조사위원회를 기계, 전기등 7개 분과위원회 9~13명(공진청 각 관련과, 공업기술원, 민간 검사소, 소비자 보호단체, 조합, 협회, 생산업체 관계자)으로 구성 운영하고, 품질조사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실시시기 등 사후관리 시책을 심의조정 하며, 공진청의 직접 품질조사 품목을 축소하여 취약상품등 특수한 품목에 한해 시도와 합동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계획조정, 품질정보의 조

사분석등 정책 기능을 확대한다.

품질조사 업무의 시, 도 위임을 확대하여 형식승인 미필등 상습적발 업체에 대한 유관기관(상공부, 수입승인기관, 세관, 검경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량상품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품질조사를 실시한다.